

『**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**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6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가. 이혼, 별거, 유기,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모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,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,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음.
- 나.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2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(안 제4조).

나.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 및 제6조)

다.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라.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.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coolai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 :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
2.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군수·구청장,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2.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
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)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최저 생계비,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

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
2.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
3.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
4.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
5.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
6.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

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
2.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
3.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4.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
제9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
2. 소득 및 자산보유 등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환수조치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,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임.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위원회 박 순 남 의원